

운영규정 개요

기본정보

기관명	가나안노인복지센터	급여종류	방문요양·방문목욕
전화번호	032-545-5559	팩스번호	032-552-6651
설치일자	2019.10.01	정원	해당없음
지원대상	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		
[장기요양등급1~5등급]	※ 노인성질환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		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목적	<p>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'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'(이하 "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</p> <p>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</p>
급여계약	<p>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</p> <p>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</p> <p>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</p> <p>④ 제1항에 따를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</p> <p>1. 장기요양 인정서 등급 변경 시</p> <p>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</p> <p>⑤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</p>
계약해지	<p>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</p> <p>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</p> <p>1.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의 부당한 "급여외행위" 요청이 있는 경우</p> <p>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</p> <p>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</p> <p>4. 이용자가 『노인장기요양보험법』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</p> <p>5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</p>
신원인수인권리	<p>1.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</p> <p>2.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</p> <p>3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업 및 생활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</p> <p>4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</p>
신원인수인의무	<p>1.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</p> <p>2.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</p> <p>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</p>
배상책임보험	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

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
운영규정 참조	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
---------	---------------